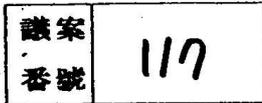


大田直轄市大田工業團地管理公團設立準備團設置運營條例案



提出年月日： 1992. 5. 4.

提 出 者： 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工業團地の 效率的 管理 및 共同 施設 管理運營의 內實化를 기하고, 共同事業을 推進, 入住業體 福利增進을 위하여 大田 第3.4工團 入住企業體 約 130個 業體를 對象으로 大田工業團地 管理公團을 設立함에 있어서 業務의 效率性을 기하고 法的인 問題등 準備를 徹底히 할 수 있도록 準備團을 設置 運營코자 함.

2. 主要骨子

가. 管理公團을 設立하기 위하여 準備團을 構成하는데 準備團 機能은 管理公團 設立計劃 樹立, 管理機構設立發起委員會 構成 運營, 定款案 制定, 創立總會準備, 法人設立, 臨時管理事務所 運營等이며, 準備團의 構成은 團長에 副市長, 副團長은 地域經濟局長이 되며, 團員은 5級以下 公務員 및 民間人中에서 10人以內로 構成함.(案 第 2, 3條)

나. 準備團을 效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하여 準備團員中 民間人으로 首席專擔要員 1人和 專擔要員 1人을 두는데, 首席專擔要員은 4級상당 대우로 하고, 專擔要員은 5급상당 대우로 함.

그리고, 準備團 業務를 補助하기 위하여 補助員 4人을 둘 수 있도록 함. (案 第 9, 10條)

- 다. 專擔要員 및 業務補助員에게는 豫算의 範圍內에서 수당 및 여비를 支給할 수 있도록 함. (案 策13條)
- 라. 管理公團이 設立되면 準備團에서 推進한 業務 및 財産일체를 管理公團에 移管하며 추후 專擔要員 및 業務補助員은 管理公團 任職員이 될 수 있도록 함. (案 第14條)

3. 根 據

- 가.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
第31條 (工業團地管理公團등) ①
②管理公團 또는 入住企業體協議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立要件을 갖추어 管理權者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나.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 施行令
第38條 (管理公團등의 設立要件) ①法 第31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團地 管理公團 및 入住企業體의 設立要件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管理할 工業團地의 面積 또는 入住企業體의 數가 商工部令이 정하는 規模 이상일 것.
 - 2. 工業團地 管理능력 및 管理에 所要되는 財政自立 計劃이 있을 것.第39條 (管理公團등의 設立節次) ①
②法 第31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權者가 管理公團 또는 入住企業體 協議會의 設立을 認可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다.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 施行規則
第 28條 (管理公團등의 設立規模) 令 第38條第1項第1號에서 “商工部정하는 規模이상”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工業團地 管理公團의 경우에는 管理하고자 할 工業團地의 面積이 150萬제곱미터 이상이거나 入住企業體의 數가 30個社 이상인 경우
 - 2. 入住企業體 協議會의 경우에는 管理하고자 한 工業團地의 面積이 15萬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入住企業體의 數가 10個社 이상인 경우

대전직할시대전공업단지관리공단설립준비단설치운영조례안

제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공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업체 복리증진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공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준비단 (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능) 준비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공단 설립계획 수립
2. 관리기구 설립발기위원회 구성 운영
3. 정관(안) 제정
4. 창립총회 준비
5. 법인 설립
6. 임시 관리사무소 운영
7. 기타 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기반준비 사항

제 3조 (구성) ①준비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및 단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준비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되며, 단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전직할시 산하 5급이하 공무원 및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 4조 (준비단장 및 부단장 임무) ①준비단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준비단을 대표한다.

②준비부단장은 준비단장을 보좌하며 준비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조 (간사) 준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2 장 회 의

제 6조 (회의의 구분)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구분한다.

제 7조 (회의의 소집) ①정기회의는 매월 첫째주에 개최한다

②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준비단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준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준비단원 3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준비단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3. 시장이 소집 요청이 있을 때
- ③ 회의의 의장은 준비단장이 되며 준비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의장이 된다.

- 제 8조 (의결) ①회의는 제2조의 준비사항 및 기타 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②회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총 준비단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정이 결정한다.

제3 장 전담요원

- 제 9조 (구성) 준비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단원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된 전담요원 2인을 두되, 수석전담요원 1인은 공무원 4급상당으로 하고, 준비 전담요원 1인은 공무원 5급 상당으로 한다.
- 제 10조 (업무보조) 준비단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보조원 2인 및 고용원 2인을 둘 수 있다.
- 제11조 (위촉) 전담요원 및 보조원과 고용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제4 장 임시관리사무소설치운영

- 제 12조 (설치운영) ①대전공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내 임시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 ②준비단원중 민간인 수석전담요원은 임시관리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사무소를 대표한다.
- 제 13조 (실비변상) 준비단원중 공무원이 아닌 전담요원 및 보조원과 고용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 장 업무이관

- 제14조(이관) ①대전공업단지 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준비단이 추진한 업무 및 재산일체를 관리공단에 이관한다.
- ②준비단원중 민간인 전담요원 및 보조원과 고용원은 추후 관리공단 설립시 임직원이 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대전공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시 까지로 한다.

(별표)

실비변상기준표

구분 대상	월 수 당	직무 수당	기말 수당	정근수당	여 비
수석전담 요원	4급 공무원 5호봉에 준함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근속기간 5년 미만의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4급 공무원 5호봉에 준함
준비전담 요원	5급 공무원 5호봉에 준함	상 동	상 동	상 동	5급 공무원 5호봉에 준함
보조원	6급 공무원 5호봉에 준함	상 동	상 동	상 동	6급 공무원 5호봉에 준함
고용직	기능직공무원 5호봉에 준함	상 동	상 동	상 동	기능직공무원 5호봉에 준함

비고 : 수당지급기준일 및 계산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